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5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원봉사캠프 정의,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며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)

나.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(안 제5조제3항)

다.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2)

라.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10. 10. ~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자원봉사활동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자원봉사활동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자원봉사자”라 함은”을 ““자원봉사자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자원봉사단체”라 함은”을 ““자원봉사단체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함은”을 ““자원봉사센터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자원봉사캠프”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.

제4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인”을 “성별을 고려하여 20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20인”을 “2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

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자원봉사캠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" <u>자원봉사활동</u> "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	1. " <u>자원봉사활동</u> "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
2. " <u>자원봉사자</u> "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	2. " <u>자원봉사자</u> "란 ----- -----.
3. " <u>자원봉사단체</u> "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	3. " <u>자원봉사단체</u> "란 ----- ----- -----.
4. " <u>자원봉사센터</u> "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말한다.	4. " <u>자원봉사센터</u> "란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5. " <u>“자원봉사캠프”</u> 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
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)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④ (생략)

제9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----- 1인-----

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
시 마포구청장-----

-----.

제5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) ①-----

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

-----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1명-----

-----.

⑤ (생 략)

⑥ -----

- 20인 -----

-----.

⑦ (생 략)

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4조(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) ① (생 략)
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제17조(보험가입) ① (생 략)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 20명 -----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그 밖에 -----
- 필요-----
-----.

제12조의2(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-----

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보험가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
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
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
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음)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12조의2(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) ②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현재 관내에 설치 및 운영 중인 자원봉사캠프는 총 16개이며, 각 캠프에 교부되는 예산은 캠프 운영비, 상담가 활동비, V-프로젝트 사업비, 청소년자원봉사캠프 사업비에 한함.

1개 캠프를 기준으로 캠프 운영비와 상담가 활동비는 연간 각각 480천원과 1,920천원이 교부되며, V-프로젝트 사업비와 청소년자원봉사캠프 사업비는 연간 각각 1,500천원과 200천원이 교부됨.

이를 합산하면 1개 캠프에 총 4,100천원의 예산이 교부되며, 16개 캠프 전체로 환산 시 1억원에 미달하는 총 65,600천원의 비용이 발생됨.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박신영 (☎ 3153-8324)